1381 해외인증자료



작성일자 2026.08.24.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터키로 디퓨저 방향제 수출시 관련규제는?

(답변)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터키 방향제 규제 개요

튀르키예에서 방향제(Hava Aromatize Edici Ürünler)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시장 유통 관리를 위해 「7223 Sayılı Ürün Güvenliği ve Teknik Düzenlemeler Kanunu」에 따른 제품안전 및 시장감시 체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존 방향제 전용 규정인 「Hava Aromatize Edici Ürünlerin Üretimine, İthalatına, Piyasa Gözetimi ve Denetimine ve Bildirim Esaslarına Dair Tebliğ」은 폐지되었으나, 방향제 제품 자체는 「7223 Sayılı Ürün Güvenliği ve Teknik Düzenlemeler Kanunu」에 따라 현재도 시장감시·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조자 및 수입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규정, 표시 및 포장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및 용도**에 따라 SEA, KKDİK 및 Biyosidal Ürünler Yönetmeliği 등의 추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경우 판매 중지, 시정조치, 시장 회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제품 안전 및 검사 총국 > Ürün Güvenliği (제품 안전)
https://ticaret.gov.tr/tuketici/piyasa-gozetimi/urun-guvenligi
- 제품 안전 및 검사 총국 > 공인 기관(PGD 기관) 및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제품 그룹
https://dabm.ticaret.gov.tr/urun-guvenligi/piyasa-gozetimi-ve-denetimi/yetkili-pgd-kuruluslari-ve-sorumlu-olduklari-urun-gruplari

터키 정부의 위험제품 데이터베이스에서 리드 디퓨저(50 mL), 룸/세탁 스프레이, 차량용 방향제 등이 SEA Yönetmeliği Madde 36/2(c)의 촉각 경고(Dokunsal Uyarı) 미부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리드 디퓨저라면 KKDİK, SEA, GBF, 운송 라벨/포장, 소비자 제품안전규제 순서로 검토하고, 제품이 항균/살균 기능을 표방하면 Biyosidal Ürünler Yönetmeliği를 추가로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 안전 및 기술 규정법 제7223호

▶ 7223 Sayılı Ürün Güvenliği ve Teknik Düzenlemeler Kanunu 제품안전/시장감시

튀르키예에서 유통·판매되는 제품이 안전하고 관련 기술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제품안전 기본법입니다.

 # 7223 Sayılı Ürün Güvenliği ve Teknik Düzenlemeler Kanunu 공식 원문

터키 제품 규정 데이터베이스 - 법률 제7223호

https://www.resmigazete.gov.tr/eskiler/2020/03/20200312-1.htm

 # 주요 규제 내용

- 적용범위 튀르키예 시장에 출시되거나 시장에서 유통·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 제품 안전성 확보 제품은 관련 기술규정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시장 유통을 방지합니다.
- 제조자·수입자·유통업체 책임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체 등 경제사업자에게 제품의 안전성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 기술문서 및 적합성 해당제품에 적용되는 기술규정에 따라 필요한 기술문서, 적합성평가 및 관련 정보를 준비·관리해야 합니다.
- 시장감시 및 검사(PGD) 정부의 권한기관이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제품 검사 및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부적합 제품 조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회수, 판매 중지, 시정조치, 리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행정·형사 제재 제품의 위험성 및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벌금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제품 안전 및 검사 총국 > 제품 안전 및 기술 규정에 관한 법률 제7223호에 따른 자주 묻는 질문
https://ugdgm.ticaret.gov.tr/haberler/7223-sayili-urun-guvenligi-ve-teknik-duzenlemeler-kanunu-kapsaminda-sik-sorulan-sorular/7223-sayili-urun-guvenligi-ve-teknik-duzenlemeler-kanunu-kapsaminda-sik-sorulan-sorular

KKDİK

▶ KKDİK (Kimyasalların Kaydı, Değerlendirilmesi, İzni ve Kısıtlanması Hakkında Yönetmelik, 튀르키예 REACH)

KKDIK는 EU-REACH와 유사한 튀르키예의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 제도로 튀르키예-REACH로 불리기도 합니다. 본 규정은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9월 30일까지 임시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핵심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EU REACH 등록이 KKDİK 등록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CHA에 REACH 등록이 되어 있는 물질이라도 튀르키예에서 KKDİK 대상이라면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 방향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별 등록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튀르키예 관보(Resmî Gazete) > 공식 KKDİK 원문

Kimyasalların Kaydı, Değerlendirilmesi, İzni ve Kısıtlanması Hakkında Yönetmelik

https://www.resmigazete.gov.tr/eskiler/2017/06/20170623M1-18.htm

 # KKDIK 등록 주체

- 튀르키예 내 제조자
- 튀르키예 내 수입자
- 튀르키에 내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OR): 해외 제조업체는 튀르키예 현지 유일대리인(OR)을 선임하여 화학물질등록시스템(KKS)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 KKFIK 대상물질

- 튀르키예 내 연간1톤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물질
- 혼합물: 제조 및 수입되는 혼합물 내 포함되는 물질 중 연간 1톤 이상 해당하는 물질
- 완제품: 제조 및 수입되는 완제품에 포함되는 물질 중 연간 1톤 이상 해당하는 물질 중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
- 제조 및 수입되는 고분자에 결합한 단량체 또는 개시물질 중 2%(w/w)이상 포함되며 연간 1톤 이상 해당하는 물질

- KTR > KKDİK (튀르키예 REACH)

https://reach.ktr.or.kr/www/contents.do?key=247

 # 핵심 일정 (2026년 최신 기준)

- 임시등록(Provisional/Temporary Registration) 마감: 2026년 9월 30일

공동등록 지연이나 데이터(LoA) 확보가 어려운 경우 활용하는 과도기적 절차로, 이 기한까지 유효한 번호를 확보해야 튀르키예 내 합법적인 거래와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 본등록(Full Registration) 마감일

2026년 12월 31일: 연간 1,000톤 이상 물질, CMR(발암·생식독성) 1A·1B 물질(연간 1톤 이상), 수생유해성(H400, H410) 물질(연간 100톤 이상)

2028년 12월 31일: 연간 100톤 이상 물질

2030년 12월 31일: 연간 1톤 이상 물질

- REACH24H > 튀르키예 KKDIK 개별 임시등록 가이드 | 실무 FAQ 총정리
https://www.reach24h.kr/industry-news/chemical/turkiye-kkdik-individual-interim-registration-guide

 # KKDİK 등록 절차

① 등록 대상 확인
: 물질명, CAS No., 연간 수입량 등을 확인하여 KKDİK 등록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② 튀르키예 내 등록자 확인
: 해외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Only Representative(OR, 단독대표자)를 지정하여 등록을 진행.

③ 공동등록 여부 확인
: 동일 물질의 기존 등록자(Lead Registrant)가 있는지 확인하고, 공동등록에 참여할 경우 자료 공유 및 Letter of Access(LoA) 등을 진행합니다.

④ 등록자료 준비
: 물질정보, 제조·수입량, 용도, 유해성 분류, 물리·화학적 특성 등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⑤ KKS(Kimyasal Kayıt Sistemi, 화학물질 등록 시스템)에서 등록 Dossier 작성
: 튀르키예 화학물질 등록 시스템인 KKS에서 등록자료를 작성합니다.
- KKS https://ecbs.cevre.gov.tr/KullaniciIslemleri/Giris?

⑥ KKS를 통해 제출
: 작성한 등록 Dossier를 KKS를 통해 튀르키예 환경부에 제출합니다.

⑦ 심사 및 등록번호 발급
: 제출자료의 완전성 확인 및 필요한 절차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후 등록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TUV SUD > Webinar: KKDIK Registration Update
https://www.tuvsud.com/es-es/-/media/regions/es/pdf-files/centro-de-recursos/webinars/2024/webinar-kkdik-registration-update/5-webinar-kkdik-registration-update.pdf
- Chemical Business Association > Turkey KKDIK Registration Strategy
https://www.reachlaw.fi/wp-content/uploads/2023/10/symposium_-_turkey_kkdik_registration_strategy_2023-10-25_fi_sk.pdf?

 # 한국 제조업체

한국 제조업체가 튀르키예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구조로 진행합니다.
①한국 제조업체
②튀르키예 Only Representative 지정
③KKS 등록자 계정 및 물질 등록
④공동등록자/Lead Registrant와 자료 공유
⑤등록 Dossier 작성
⑥KKS를 통해 튀르키예 환경부 제출

SEA

▶ SEA (Maddelerin ve Karışımların Sınıflandırılması, Etiketlenmesi ve Ambalajlanması Hakkında Yönetmelik, 튀르키예 CLP)

튀르키예 SEA 규정은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Classification), 표시(Labeling), 포장(Packaging)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CLP 규정(EC No. 1272/2008)을 기반으로 하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를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EA 규정에 따라 제조자, 수입자 및 공급자는 물질 또는 혼합물의 유해성을 평가하여 해당되는 유해성 등급으로 분류하고, 유해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안전한 취급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포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방향제 완제품의 유해성 분류·표시·포장 및 해당 물질의 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튀르키예 관보(Resmî Gazete) 공식 SEA 규정 원문

- MADDELERİN VE KARIŞIMLARIN SINIFLANDIRILMASI, ETİKETLENMESİ VE AMBALAJLANMASI HAKKINDA YÖNETMELİK
https://www.resmigazete.gov.tr/eskiler/2013/12/20131211M1-1.htm?

 # SEA 규정 주요 요구사항

유해성 분류	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을 SEA 기준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분류·표시 신고	시장에 출시되는 유해물질은 KKS를 통해 분류·표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물량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벨링	유해성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문구(H문구), 예방조치문구(P문구), 제품 및 공급자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튀르키예어 사용	수입되는 유해물질·혼합물의 라벨과 SDS는 튀르키예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포장 요건 준수	누출 및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SEA에서 정한 포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준수	유해물질의 경우 시장 출시 후 1개월 이내 분류·표시 신고가 요구됩니다.

 # SEA 준수 절차

① 물질 확인: CAS No., EC No., 성분 및 함량 등을 확인합니다.
② 유해성 분류: SEA 기준에 따라 물질의 물리적·건강·환경 유해성을 분류합니다.
③ 라벨 작성: 유해성 그림문자, 신호어, H문구, P문구, 제품정보 및 공급자 정보를 튀르키예어로 표시합니다.
④ SDS 작성: 튀르키예 규정에 적합한 SDS를 작성하고 공급자에게 제공합니다.
⑤ KKS 분류·표시 신고: 유해물질의 분류·표시 정보를 KKS를 통해 신고합니다.
⑥ 포장 요건 확인: SEA 규정에 따른 포장 요건을 충족합니다.
⑦ 정보 관리 및 업데이트: 물질의 성분이나 유해성 정보가 변경될 경우 라벨, SDS 및 신고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 유의사항

SEA의 분류·표시 신고는 물질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혼합물 자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신고 대상인 유해물질은 연간 생산·수입량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환경부는 시장에 출시되는 유해물질에 대해 물질량에 관계없이 분류·표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SEA 규정의 적용범위는 제2조(MADDE 2 – Kapsam)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GBF(SDS)

▶ GBF(SDS)

튀르키예에서 GBF(Güvenlik Bilgi Formu)는 영어로 SDS(Safety Data Sheet, 안전보건자료)를 의미합니다.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의 유해성, 안전한 취급·보관 방법, 응급조치, 폐기 및 운송정보 등을 공급망에 제공하는 문서이며, KKDİK 규정 부속서-2(Annex II)에 따라 작성됩니다.
→ 제품이 유해 물질/혼합물이라면 터키어 안전보건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튀르키예 관보(Resmî Gazete) 공식 KKDİK 규정 원문

KKDİK (Kimyasalların Kaydı, Değerlendirilmesi, İzni ve Kısıtlanması Hakkında Yönetmelik)
https://www.resmigazete.gov.tr/eskiler/2017/06/20170623M1-18.htm

- KKDİK(2017) 제27조 및 부속서 2(Annex II)
별도의 GBF규정이 있지 않고, KKDİK(2017)규정의 제27조 및 부속서 2(Annex II)에 GBF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27조 – Güvenlik bilgi formu için gerekenler
: 안전보건자료(GBF/SDS)의 작성 및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혼합물 등에 대해 Ek-2(Annex II)에 따른 GBF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GBF는 튀르키예어로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Ek-2 (부속서 2, Annex II) – Güvenlik Bilgi Formunun Hazırlanması
: GBF의 작성 형식 및 16개 항목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GBF 주요 16개 항목

Maddenin/Karışımın ve şirketin/işletmenin tanımı – 물질/혼합물 및 회사 정보
Zararların tanımı – 유해성·위험성
Bileşimi/İçindekiler hakkında bilgi – 구성성분 정보
İlk yardım önlemleri – 응급조치
Yangınla mücadele önlemleri – 화재 진압
Kaza sonucu yayılma önlemleri – 누출 사고 조치
Elleçleme ve depolama – 취급 및 저장
Maruz kalma kontrolleri/kişisel korunma – 노출관리 및 개인보호
Fiziksel ve kimyasal özellikler – 물리·화학적 특성

Kararlılık ve tepkime - 안정성 및 반응성
Toksikolojik bilgiler - 독성 정보
Ekolojik bilgiler - 생태학적 정보
Bertaraf etme bilgileri - 폐기정보
Taşımacılık bilgisi - 운송정보
Mevzuat bilgisi - 법적 규제정보
Diğer bilgiler - 기타 정보

 # GBF 주요 요구사항
- 16개 항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튀르키예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SEA 규정에 따른 유해성 분류 및 표시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 KDU(화학물질 평가 전문가)의 자격 및 정보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 제품의 유해성, 성분, 물리·화학적 특성, 취급·보관, 응급조치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새로운 유해성 정보, 성분 변경 또는 관련 규정 변경 등이 발생하면 GBF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및 노출 시나리오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 외 규제

▶ Biyosidal Ürünler Yönetmeliği

Biyosidal Ürünler Yönetmeliği는 튀르키예에서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제조·수입·허가·등록·판매·표시·포장 및 관리를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방향제 제품이더라도 제품에 **항균·살균·소독·미생물 제거 등의 기능**을 주장하면 제품 등록/허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터키 공식 DB도 Biocidal 제품에 대해 inventory registration, registration, licence 체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소독제, 살균제, 보존제, 방충·살충 제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반 화학물질 규정인 KKDİK·SEA와 별도로 Biyosidal Ürünler Yönetmeliği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튀르키예 관보(Resmî Gazete) 공식 BİYOSİDAL ÜRÜNLER YÖNETMELİĞİ 규정 원문
https://resmigazete.gov.tr/eskiler/2009/12/20091231m4-11.htm?

문 의 처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수출관련 인증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인증사항 이외의 세금 및 HS Code는 현지 세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소비자제품에 대한 미국 연방규제(강제)를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이외에 주별 규제와 민간 사기업 규정(예: 아마존)은 저희 업무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센터의 해외인증조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연구•자료수집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사설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해당 서비스 대상이 아니므로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미국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관련인증기관,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기관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동향이나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바이어/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터키 이스탄불 무역관
https://www.kotra.or.kr/istanbul/index.do

또한 KOTRA 홈페이지의 문의/상담 메뉴를 통해 상세 내용에 대해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 방법: KOTRA 홈페이지(회원 가입 필요) ⇒ '문의·상담' 메뉴 ⇒ 전화, 챗봇, 온라인 상담 선택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 한국무역협회
- 무역애로상담 및 무역현장컨설팅 1566-5114
https://membership.kita.net/coc/problem/serviceImformation.do
- Trade Pro 디지털 무역상담
https://kita.net/tradePro/tradeProMain/tradeProMain.do

▶ 규격
규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거나 한국표준정보망 (KSSN)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관련 규격 파악
- 규격 구입: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

▶ 시험기관
 #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 국내 시험소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서는 특정 기관이 수행하는 시험/교

정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해 인정하고 해당 분야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각 시험기관의 적격성을 인정하며, 공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즉, 특정 규격/시험에 대해 KOLAS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KOLAS 시험기관입니다.)
- 한국인정기구 KOLAS > 시험기관검색
https://www.knab.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 비 KOLAS 기관
위의 KOLAS 기관이 아니어도 시험이 가능한 기관은 많으며, 미국 수출이 목적이라면 미국계 시험기관이나 미국 내 시험기관 또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등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제인증기관 한국 지사
그 외에 국내에 진출해 있는 국제인증기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소재한 대표적인 국제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만 기재)**
- Bureau Veritas / 02-555-8922 / www.bureauveritas.co.kr
- Intertek / 02-567-7474 / http://www.intertek.co.kr
- SGS / 02-709-4652 / http://www.sgsgroup.kr/
- TÜV SÜD / 02-3215-1100 / www.tuv-sud.kr
- TÜV Rheinland / 02-860-9860 / https://www.tuv.com/korea/ko/
- Nemko / 031-330-1700 / https://www.nemko.com/ko
- UL Solutions https://korea.ul.com/
- 기타

※ 업무대행기관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국내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공 기관 성격의 인증기관으로는 아래의 3개 기관이 대표적입니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1577-0091, www.ktr.or.k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080-808-0114, www.ktl.re.kr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1899-7654, www.ktc.re.kr

지원 사업

※ 각 시도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지원사업 공고 > 수출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list.do
- 기업마당 비즈인포 > [경기] 시흥시 2026년 해외 쇼핑몰(온라인) 입점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07&rowsSel=6&rows=15&cpage=1&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searchPblancNm&condition1=AND&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19929

- 기업마당 비즈인포 > [경남] 2026년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소비재 수출 초보기업 O2O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hashCode=07&rowsSel=6&rows=15&cpage=1&cat=&schPblancDiv=&schJrsdCodeTy=&schWntyAt=&schAreaDetailCodes=&schEndAt=N&orderGb=&sort=&preKeywords=&condition=searchPblancNm&condition1=AND&keyword=&pblancId=PBLN_000000000119952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 해외조달정보센터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 해외조달정보센터 > 해외조달정보 > 해외입찰정보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bbs/selectBoardList.do?boardId=GPASS004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의 각종 해외인증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2026년 일반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과 '2026년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공고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지원)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2026년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ktrInfo.do?key=9093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본관동 303호 (수출인증지원센터)

※ 주 의 !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컨택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81
인증 표준 콜센터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작성일자 : 2026.08.24.]